

채무자 주식회사 신일건업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

| | |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사 건 | 2012회합220 | 회생 |
| 채 무 자 | 주식회사 신일건업 서울 강남구 삼성동 8-5 | |

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15. 12. 1.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였으므로,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- 다 음 -

1. 주 문

이 사건 회생절차를 폐지한다.

2. 이유의 요지

채무자가 회생계획을 수행할 가망이 없음이 명백하므로,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8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2015. 12. 1.

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파산부

재판장 판사 이재희

 판사 서창석

 판사 김태준

